

구제역 중간평가 및 재발방지대책

농림부 축산국

I. 구제역 발생상황	674
II. 방역조치사항	674
III. 피해농가 지원대책	677
IV. 구제역대책 중간평가	679
V. 재발방지대책	680
1. 국내발생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2. 제도 및 조직 등 방역시스템 보완	
3.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검사 강화	
VI. 향후 추진계획	685

I. 구제역 발생상황

3.24일 파주 젖소농가에서 처음 발생 신고된 이후 현재까지 총 81건이 신고되었으며, 검사결과 현재 6개 시·군 15 농가의 한우 62, 젖소 19두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발생지역 : 경기 파주·화성·용인, 충남 홍성·보령, 충북 충주

이번 구제역은 검역원의 검사결과 중국·대만·몽고·러시아 등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한 OI type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

국제표준연구기관인 영국 퍼브라이트연구소와 미국 해외동물질병 연구소에서의 시험 결과 돼지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4.16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발생이 없고, 의심가축에 대한 신고도 줄어드는 등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의 주변 여건 및 구제역의 특성상 자발 가능성은 상존

이동제한 지역(6,503두)과 비발생지역(3,568두)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현재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

파주·충주·용인 보호지역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3,723두 음성

· 항체반응이 나타난 23두에 대해서는 해당농장 확대 정밀검사중

수의과대학 교수 등 민간전문가와 축산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역학조사위원회]가 유입경위 및 전파 경로 등에 대하여 다양적으로 조사중임

OIE 아·태지역 대표, 호주의 역학조사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조사 하였고, 앞으로 퍼브라이트 연구실장 등 해외전문가를 초청하여 보다 철저한 조사를 할 계획임

II. 방역조치 시행

〈예방 단계〉

**'97. 3월 대만 구제역 발생이후 국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입방지
대책 추진 및 구제역 발생에 시전 대비**

대만구제역 발생상황에 대한 연구조사 실시

수의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단 대만파견 ('97. 6) 및 국제세미나 참가(5회 : 스위스, 일본, 대만, 인도, 캄보디아) 등을 통하여 대만 구제역 발생 및 확산원인, 방역조치 및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중국 본토에서 해안으로 밀수된 돼지고기·식육부산물 또는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의 여행객·휴대육류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
- 진단기술 미흡·예방약 부족 및 초동방역 지연 등의 문제점

국무총리실·해양경찰청·관세청 등 관제기관의 긴밀한 협조하에 구제역 유입방지 대책추진

대만·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산 가축 및 축산물 수입금지

공·항만 검역강화 및 국제무역항 등에 대한 점검(668회) 실시



<발생 단계>

'00. 3.24일 파주 젖소농장에서 신고된 이후 초동방역 조치 실시

- 밀수품 단속 및 여행객 휴대품 검색강화, 중국·대만 여행객에 대한 발판소독 및 수하물 검색(X-ray) 등
- 취약지역 밀수품 단속 및 관계기관 교육·홍보, 선박·항공기 남은 음식물 안전처리 실태 확인(관계기관 합동조사 등)
- 중국산 벗짚 수입금지, 구제역 발생지역산 산야초 소독 등

**중국 가축사육농장 방문자 인적사항 파악을 통한
방문자에 대한 개별홍보 및 대국민 홍보도 강화**

대한양돈협회 등 23개 축산관련단체 및 협회 등에 농장방문자 수칙, 도착시 신고요령 등 홍보 정부합동 담화문 배부(72,000부) 등 대국민 홍보강화

- 대한항공, 아시아나, 중국 항공 등 12개 항공사에 검역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하여 배포(372개)
- KBS·MBC·SBS 및 중앙일간지·전문지 홍보(78회)
- 홍보캠페인 실시(32회), 세관 등 유관기관·여행사 홍보 (1,361회)
- 무역항·연안항에 현수막 설치(367개)
- 관계기관 등에 포스터 부착 및 리후렛·전단 배부 (1,390천부)

**신속하고 정확한 구제역 진단 및 실험을 할 수 있는
차폐연구시설 확보·예방약 비축 및 방역훈련 등
구제역 발생에 대비**

예방약 비축 및 항원뱅크 운용(완제품 30만두, 항원 200만두)

전국 소·돼지에 대해 분기별로 구제역 항체 검사 실시(13,364두)

농림부, 시·도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제 상황을 가상한 방역 CPX 실시('97~'98)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에 의거 관계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검역원 전문가의 신고가축 임상검사와 정밀 검사를 위한 가검물 채취
발생농장에 대한 가축의 이동상황, 출입자 현황파악 등 역학조사 실시

검역원 차폐연구시설에서 검사실시 및 국제표준 연구 소에 검사의뢰
채취 가검물에 대한 신속한 정밀검사(PCR, ELISA 등) 실시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인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검사시료를 송부하여 확인검사 의뢰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및 소독 등 초동방역 실시
발생농장에 대한 동물·축산물·사람·물품의 출입 등 이동을 통제
축사내외 물건·사람에 대한 소독실시

구제역 비상대책본부 및 현장통제본부 설치 준비
군·경찰 등에 이동제한, 불법 유통단속 등 통제협조 요청
방역통제, 수매실시, 행정지원조치 준비

농림부, 해당 시·도 및 검역원과 24시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

대만은 초동방역실패로 '97. 3.19일 최초 발생후 6.17까지 20개지역 6,144농가 1,011천두의 돼지가 감염됨
* 우리는 6개 시군 15농가 81두 감염

<방역단계>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되어 강력한 긴급방역 실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구제역특별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확산방지 및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협의

전국 농축산관련 조직 상시 비상근무체제 돌입 및 수의사 동원령 발령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우제류 가축 살처분·매몰 (182농가, 2,223두)

살처분은 반경 500m이내의 범위에서 역학 관계 등에 따라 결정

사료나 벗짚 등 오염추정 물건은 소각 또는 소독후 매몰

살처분 농가의 재임식은 살처분 날부터 3개월 이후에 허용

발생농장 반경 10km이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차단벽을 설치 구제역 확산에 대비하여 예방약 추가 확보 (300만두분)

발생농장 반경 20km이내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실시

반경 10km까지 보호지역, 10~20km까지 경계 지역으로 설정하고 가축은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토록 하고, 주요 도로망에 군·경·공무원 합동으로 초소를 설치하여 가축·사람·차량 등의 이동제한·세척·소독실시

전국의 가축시장을 잠정 폐쇄하고 가축품평회 개최 취소

3km이내 원유는 소독후 폐기하고 3~20km의 원유는 초고온멸균(UHT) 처리하여 유통

인공수정의 경우 보호지역은 전면 금지하고 경계지역은 자가 수정만 허용

- 발생일 15일전부터 최종발생 15일후까지 생산된 보호 지역산 정액 폐기

도축된 고기는 뼈와 부산물을 제거하여 냉장 처리후 정육유통

<사후관리단계>

예방접종 가축은 이동제한 해제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및 관리대장 운영

예방접종 가축은 천공(穿孔) · 낙인표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 종돈 · 모돈은 귀에 “O”형태로 천공하고, 육성돈은 예방접종 증명서 교부
- 소 · 사슴 · 염소는 둔부에 “O”형태의 낙인 표시

관리대장 작성, 도축장 출하(매매)확인서 발급

- 농장단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원본은 시 · 군, 사본은 읍 · 면과 농가가 보관 관리
-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시 읍면장의 확인서 발급 의무화

보호지역밖 이동은 혈청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에 한하여 허용

- 가축의 이동과 함께 관리대장도 함께 이동

도매시장 · 공판장 5개소와 한냉 중부공장 등을 예방접종 가축의 출하 도축장으로 지정

계열화업체의 자가도축은 기존 계열화 도축장을 지정 · 운영

기타 정육점, 대형업소 납품업체의 의뢰도축은 현재 보호지역 출하가축 도축장으로 지정된 도축장을 재지정 · 운영

보호지역 밖으로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 · 군 또는 지역 축협에서 관내 판매농가와 구입농가를 파악 · 알선

지역축협의 가축시장 ·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알선 · 유도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 지도

농장내 자체사육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예방약과 소독약품 우선 공급

III. 피해농기 지원대책

〈기본 방향〉

살처분 · 이동제한 · 예방접종 등 구제역 방역조치에 협력한 농가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

수출증단 및 출하제한에 따른 축산물 수급 · 가격안정 도모

〈살처분농가에 대한 지원〉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의 시가를 전액 보상
해당지역 공무원, 생산자단체 대표, 농가대표 등으로 구성된 [구제역 살처분가축 보상평가 위원회]가 합의한 시가를 전액 보상

오염이 의심되어 소독 · 폐기된 사료 · 건초 등은 구입 당시 가격으로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보상

사료 · 건초 등은 소각 · 매몰당시 평가액의 40%를 현금 지급하고, 60%는 가축 재입식시 현물로 지급

원유 폐기 낙농가에 대해서는 최근 원유(原乳) 가격의 100%보상

살처분 후 재입식 금지로 인한 휴업기간 생계비 지원
축종별 마리당 연소득액을 휴업기간 3개월로

환산하여 마리당 15~420천원 수준으로 지급
※가축 재입식시 입식자금은 별도 융자지원

중고생 학자금 면제, 생계비 일부 지원 등 재해대책에
준한 지원

이자감면과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및 납부
기한 연장

축산경영자금과 축산발전기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또는 중단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경
영안정시까지 처리의 긴급경영자금 융자지원

농가의 담보부족 해소를 위해 가축전염병도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연대보증을 면제

지원규모도 당초 501억원에서 80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돼지·한우에서 젖소·
염소까지 확대

인공수정 금지, 가축의 입식제한, 종돈과 송아지 판매
제한 등 농가 손실부분 종합지원

축산기술연구소 보유 종축 우선 분양, MMA
물량 우선 배정

축산종합 자금사업, 유통·경제활성화 자금,
축산경영자금 등을 발생지역에 우선 지원

젖소의 공태(空胎)발생으로 인한 유량(乳量)
손실에 대하여 마리당 평균 307천원을 지원

〈이동제한지역에 대한 지원〉

이동제한지역내 한우·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시가 수매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적체된 돼지(100kg이상)
및 한우(암소 520kg, 수소 600kg이상)에 대한
특별수매 실시

- 적체가 심해 출하규격을 넘긴 돼지는 110kg 초과분에
대하여 수매가격의 10%를 가산하고 한우는 적체기간중
사료비의 50% 수준인 두당 5만원을 가산 지급

종돈장에서 생산된 종돈중 분양이 적체된
100kg이상 후보종돈의 경우 종돈가치를 고려
하여 비육돈 수매가격의 1.5~2배 수준으로 수매

새끼돼지(매몰비용 포함)는 두당 60,000원
으로 수매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판로제한, 사육감축

가축 매몰 및 축산분뇨처리에 따른 지원실시

살처분 가축 매몰로 인한 상수원 오염우려
지역에 대해 생활·농업용수 사업비 지원
(1,690백만원)

축산분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축산분뇨
저장탱크 설치 지원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지원〉

돼지고기 수출중단에 따른 수출해당물량 수매 및 수출
업체 지원

경영비 수준으로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안심·등심에 대해 수매하고 기타부위는 시장에
판매 가능토록 조치

수출업체에 돼지구매 선도금 190억원을 무이
자로 지원하고, 정책 자금 상환유예(1년) 및
수출미이행 위약금 부과 면제

축산물 안전성 홍보 및 우리 축산물 소비확대운동 전개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며, 고기도
인체에 전혀 해가 없음을 중점 홍보

소비자단체, 농·축협 등을 통한 우리 축산물
소비확대 추진

공공기관·단체 등에서 100여회의 시식회 개최

〈예방접종가축 사후관리에 따른 농가지원〉

예방접종 가축의 표시 및 사후관리로 야기되는 농가의
불편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시농가에 배합
사료 지급

축종별 마리당 2~10천원 전표지급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보호지역 해제일부터 일정
기간 수매 실시

수매중단후 수매가격을 보장해주는 계통출하 추진

예방접종 가축의 도축장 출하시 기타가축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차액지원 계획

IV. 구제역 대책 중간평가

대한 구제역 발생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참고한 차폐연구시설 운용, 예방약 비축·보유, 가상 발생에 대비한 CPX 실시 등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구제역 확산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었음

차폐연구시설 운용·진단기술 개발 등으로
신속한 진단 가능

군·경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발생지역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 초동 방역 조치가 가능하였음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과정에서 양축농가의
방역에 대한 인식 전환 등으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전파속도가 빠른 돼지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구제역특별대책협의회]
설치·운용으로 법정부적인 방역 및 수급안정대책
추진이 가능

축산물 안정성 홍보 및 범국가차원의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운동 전개로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살처분 가축에 대한 시가보상, 소독·폐기된 사료·
건초 등에 대한 구입가격 100% 보상, 중고생 학자금
면제, 세제지원 등 재해대책에 준한 지원으로 양축
농가의 적극적 협력 유도 가능

발생현황과 추진대책에 대한 정례적인 언론브리핑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전국민적 협력 유도 가능

그 동안의 구제역에 대한 홍보가 공항만에서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농가의 신고가 늦었고, 악성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동지침 및 훈련부족 등으로 초기에 일선 현장에서 혼선 발생

파주의 최초 신고도 증상이 나타난 4일 후에야 광견병으로 신고되고, 홍성은 자가진료 등으로 타농장까지 확산되는 문제 발생

세부방역실시요령 부족·민원우려 등으로 방역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존하게 되어 신속한 방역추진 애로

발생이 6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이동제한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반경 20km의 광범위한 이동제한 유지 및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에 행정력 및 인적·물적 비용 소요가 과다

질병확산에 대한 경계보다는 피해에만 집착한 일부농가는 예방 접종을 거부하여 이동제한 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발생

국가위기관리 상황에서 지자체 및 농가의 소지역주의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정권한 부족 등으로 수급안정대책 추진 곤란

출하물량에 비해 도축·가공능력이 부족한 지역은 소지역주의로 도축·출하가 적체되어 양축농가의 피해 발생

역학조사 전문가 및 수의경제학 전문가 부족 등으로 정확한 유입경위 및 전파경로에 대하여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질병피해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V. 재발방지대책

《기본방향》

국내발생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사후관리 및 예찰활동 강화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제도 및 조직 등 방역시스템 보완

악성기축전염병 방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작성 및 정례훈련 실시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검사 강화

공·항만 검역강화 및 해외정보수집체계 강화

동·식물 검역기능 통합 등 검역·검사조직 강화

1. 국내발생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가.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강화

2차 예방접종 완료후 청정화시까지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 강화

예방접종 표시 및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농장별 관리대장 기록유지 및 출하(이동) 확인서 발급

주기적인 임상관찰 및 기록·유지

보호지역밖 이동가축에 대한 혈청검사

검역원·축산기술연구소 등 관계자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기초 지자체(시·군, 읍·면·동)



및 가축방역기관의 발생지역 사후관리실태 점검

점검사항 : 사후관리지침 및 이동제한명령 준수여부

- 농장별 관리대장 기록유지 지도 및 홍보
- 지정도축장의 도축검사실태
- 이동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점검반 구성 · 운영

- 발생지역은 검역원 관계자로 지역담당관을 지정 운영
- 기타지역 사후관리 점검은 현장농정 점검반 활용
- 분기별로 1회 정기점검 실시(필요시 수시 점검)
- 점검반 편성(안)

구 분	대 상	점검기관	점검반 편성
발생지역	예방접종 19개 시군	검 역 원	19명 = 19개소 × 1명
도축장	도매시장 등 예방접종가축 출하 도축장	검역원지원	15명 = 1명이 2~3개의 도축장(30개소)점검
가축시장	15개소(경기 6, 충북 3, 충남 6)	축산기술 연구소	15명= 15개소 × 1명
기타시군	비발생지역 119개시군	농 림 부 (현장농정)	119명(138시군 -19개시군)
계			168명

* 농림부(검역원)에서 주요 check list 작성하여 지역담당관에 대한 교육실시(7월초)

4. 예찰활동 강화

관제공무원과 민간방역요원으로 예찰반을 편성하여 예찰 실시

시장 · 군수가 가축방역관 · 농업기술센터
지도직공무원 · 읍면 직원 · 공수의 · 지역축협
(공방단) · 비대본 · 생산자단체 등의 방역요원
으로 예찰반 편성

- 공무원 및 민간방역요원 2인으로 구성된 예찰반을 발생 지역(6개 지역)은 5개반, 인근 시 · 군(13)은 2개반, 기타지역은 1개반 편성

예찰활동은 보호지역(19개 시군)은 월2회,
기타지역은 매월1회 실시

- 1회 예찰시 자연부락단위별로 2개농장 이상 방문 실시
- * 지역축협으로 하여금 소속수의사 또는 가축방역보조원을 활용하여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축의 임상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

예찰반 활동의 적극성을 유발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 이상가축 발견 신고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20만원, 구제역 확인시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관련 세부기준은 별도 시달
- 재원은 현행 [방역조치 위반농가 신고포상금]을 활용
- '00년 예산 : 1억원(축발기금)

[시 · 군단위의 예찰협의체] 신설 운영

- 시장 · 군수가 매월 1회이상 예찰반원과 생산자단체, 농가대표(전기업농 중심), 동물약품 · 사료판매원 등으로 예찰협의체를 구성 · 운영
-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파악 및 방역대책 추진

현장농정 점검시 예찰협의체 운영 여부 점검

5. 협정검사 강화

발생농장 시험입식 가축의 협정검사 및 방역관리 강화

검사주관 : 검역원

특집

- 임상관찰 및 기록, 검사시료 채취(혈청)는 관할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이 실시

검역원은 시험입식 가축의 방역관리요령을 마련 시달

발생지역은 청정화 완료시까지 매년 7,500두 혈청
검사 실시

검사를 위한 채혈은 관할 가축방역기관이 농장 또는 도축장에서 실시

- 도축장 4,500두, 농장 3,000두 채혈(돼지의 경우 돼지클레라 채혈시료를 활용)

검역원에서 검사 실시후 항체반응이 나타날 경우 확대 정밀검사 및 추적조사 실시

비발생지역은 시·도 가축방역기관 주관으로 매년 20천두 검사

- 검역원에서 가축방역기관(도별 2명씩)에 검사 기법 기술전수 및 진단킷트 공급
- 검역원에서 별도의 교육계획 수립 실시(7월초)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는 자체 혈청검사 계획을 수립 실시

- 관할 가축방역기관, 공수의 및 방역보조원 등으로 채혈반 편성·운영
- 매월 검사실적을 도·검역원에 보고(통보)

※ 양성 및 의양성 개체는 검역원에 송부하여 확인검사 수행

각. 농장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보호지역은 격주로, 기타지역은 월1회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

- 축산단지 등 대규모 농가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 중·소규모 농가는 공방단 방역장비나 단위농협의 살포장비를 동원하여 소독실시
- 소독약품은 기 공급된 소독약품을 활용하되 추가 소요되는 경우 긴급방역비로 지원조치
- 시·도별로 소독의 날을 정하여 동시에 일제소독 실시

도축장·가축시장의 가축운송차량 등의 소독실시여부
점검 강화

현장농정 점검반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분기1회) 점검 실시

마. 구제역 방역요령 등 교육·홍보 강화

양축농가·수의사·인공수정사·사료 또는 동물약품 판매업자·민간병성감정기관 등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로 조기신고체계 구축

구제역의 주요 임상증상·의심축 발견시 조치 사항·신고요령 등에 대한 홍보자료 제작 배포(6월중)

· 제작내역: 40천부(비대본 협조)

매년 실시하는 수의사·검사보조원 등의 보수 교육 등을 활용

· 농가, 인공수정사, 사료·동물약품판매원은 단체 중심으로 실시

바.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구성·운영 등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축방역중앙협의회]
구성·운영

검역원, 시·도, 생산자단체 및 민간방역기구



등 15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격월 간격으로 협의회 개최를 정례화

- 구제역, 돼지콜레라, 뉴캐슬병 등 주요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점검

구제역 대책추진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실시

2. 제도 및 조직 등 방역시스템 보완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관한 강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8조(농림부장관의 지시)에서 농림부장관은 가축전염병외의 가축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짐으로써 가축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시·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은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의 방역지침 등에 의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검역원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방역업무의 검역원 위임여부 검토

안) 가축전염병외의 가축전염성질병 발생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외의 가축전염성질병 발생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관련 법적근거 신설

역학조사 활동을 법제화하여 역학조사 관련 예산확보 및 관계기관의 협력 유도

안)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도록 하고

안) 역학조사반 설치 및 관련기관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방역지역으로 들어오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경리와 가축 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에서 시·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가축의 경리·억류·이동제한을 명하거나 일정범위를 정하여 교통차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수매 등을 위해 이동제한지역으로 역 유입되는 경우 방역 및 수급대책 추진이 곤란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이동제한지역으로 유입되는 사례에 대한 명백한 처벌규정 마련

안) 교통차단 등 ⇒ 이동·교통차단 등

예방접종 실시과정에서 부상당한 가축의 보상 근거 마련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보상금 등)에서 검사·주사·약물목욕·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동물 또는 사산이나 유산된 동물의 태아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

예방접종 실시과정에서 부상당한 가축의 보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안) 죽은 동물 → 죽거나 부상당한 동물

민간방역 요원의 예찰업무 활성화를 위한 [명예가축 방역감시원] 제도 도입

농가, 사료·동물약품판매자, 축산물가공처리 법상의 원유검사 보조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업무와 수당지급 등 세부 운영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규정에 대한 검토·보완

제명을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으로 개정하고 방역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현 방역 규정에 대한 재검토

- 방역범위는 현행 유지하되 경계지역의 방역조치를 완화 (지육반출 허용·부산물 처리완화 등)하거나, 방역범위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

예방접종 가축의 사후관리비용 및 예방약 항체와 감염항체간의 구분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 예방접종범위 조정 검토

* 보호지역 해제이후 농가항체검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

수매 등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도축장·가공장을 사전 지정제 실시

- 지역별로 출하예정량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도축장·가공장을 사전 지정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농림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이번 경험을 토대로 방역·수급·지원대책을 포괄한 한국형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고, 정례적인 연습 실시로 구체역 발생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발생상황별로 양축농가·생산자단체·정부 등 방역관련 주체의 구체적 행동요령(수매·지원 절차 포함) 작성·시달

발생 가능성이 높은 3~4월전에 가상발생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실시

- 공·개업수의사 동원, 군·경 배치, 제한적 차단통제 및 소독 등
- 지역별로 출하예정량을 감안한 도축·가공장 사전동원 지정

방역주체별 기능을 구체화하고 중앙정부와 자자체 및 민간방역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선진국형 방역체계로 전환

돼지콜레라 비대본 조직·공동방역사업단 등 민간방역조직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확대·개편하여 정부와 역할분담 추진

- 가축전염병 검진, 이동통제, 살처분, 기술지원 등을 정부수행
- 예방접종, 소독 등 차단방역 등을 민간방역단체 또는 농가 자율시행

생산자단체별 자조금 사업·가축공제사업의 활성화로 농가의 방역에 대한 책임과 인식을 제고하여 정부의 존경함을 해소

- 자조금·공제보험료에 대한 정부부담비율 확대 및 보험료를 질병 피해와 연계 추진

예찰활동 강화 등을 위해 일선 지자체 및 가축방역 기관의 기능 강화

IMF체제이후 “작은정부 구현” 등으로 축소된 일

선 시 · 군의 방역 · 축산물위생 담당 조직의 확대

- 이번 구제역 발생지역중 홍성 · 보령을 제외하고는 가축 방역관 (수의직 공무원)이 1명도 없음
- 방역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해서도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가축위생시험소 조직 · 장비 확대

- 현재 1개 가축위생시험소(지소포함)가 평균 3개 시 · 군을 관할
- 지속적인 임상 · 혈청검사 강화를 위해 조직 · 장비 · 인력 확충
- 공익근무요원 또는 수의사의 병역특례 보충제도 활동방안 추진

⇒ 장기적으로 검역원의 조직 강화방안과 연계하여 검토

3.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 · 검사 강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및 검역기술 정보수집체계 확립

중국 · 일본 · 러시아 · 동남아 등 주요 교역국가
와의 인적 · 기술협력을 강화하여 신속한 질병
발생 정보입수 및 검역기술 정보교환

현지 검역관 파견 또는 해외주재관 활동
강화로 현지검역 강화

위험평가의 제도화를 통한 검역 · 검사 · 연구업무의 과학화

국가별 · 품목별 수입위생조건을 위험평가를
토대로 세분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추진

국내외 교육훈련 및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한
검역 · 검사 · 연구능력 제고

-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신속 진단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 및 적용
- 검역 · 역학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 활용

공항만 검역 강화 및 현장중심 검역체계 확립

국제 공 · 항만, 연안항 등에 대한 검역조직 · 시설 ·

장비 확충

- 현장지원 · 출장소 조직강화
- 검역시설 보강 및 첨단검역장비 확보(노후장비 교체)

불법 휴대육류 검색강화 및 밀수입 단속 강화

- 휴대육류 미신고자에 대한 고발조치 강화 등 엄격한 법집행
-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구축 및 밀수품 단속 강화

구제역 발생국산 수입간초류에 대한 소독 강화

- 입항지 부두에서 포르말린 가스소독 또는 일정기간
격리보관 등

동 · 식물 검역조직을 일원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가축 방역조직간의 연계 강화

VI. 향후 추진계획

국내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구제역 홍보자료 배포(7월중)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예찰 및 소독
실시 점검(7월중)

시 · 도방역기관 요원 기술전수교육 및 진단키트
제공(7월중)

시 · 도별 채혈물량 배정(7월중)

구제역 중앙협의회 및 관계부처협의회 개최(7월중)

제도 및 조직 등 방역시스템 보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정기국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 운영

특집

긴급행동지침 시달(7월중)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개정(8월중)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검역·검사 강화

검역원 조직 개편 추진(임시국회)

검역·검사강화 세부계획 수립

별첨 1

구제역 보호지역별 해당 시·군 현황

발생 지역		보호지역 시·군	비 고
경 기	파 주	1개군 : 파주	
	화 성	5개군 : 화성, 수원, 안산, 군포, 의왕	
	용 인	4개군 : 용인, 오산, 평택, 안성, 화성	화성 중복
	소 계	10개 시군	
충 북	충 주	3개군 : 충주, 음성, 괴산	
충 남	충 성	3개군 : 충남, 예산, 서산, 보령	보령 중복
	보 령	3개군 : 보령, 서천, 부여	
	소 계	6개 시·군	
3개도	6개 시군	19개 시·군	

별첨 2

사후관리 대상 가축 현황

6.16일 현재

지역	농가수	총 종					
		계	한육우	젖소	돼지	산양	사슴
파주	742	75,209	1,590	8,840	63,045	1,284	450
충주	1,809	64,139	6,995	1,118	49,578	4,117	2,331
충성	6,156	393,555	28,955	5,749	349,420	7,055	2,376
화성	1,239	61,325	4,457	13,494	39,708	2,225	1,441
용인	822	65,253	11,602	3,357	47,979	1,384	931
보령	2,285	17,825	5,809	1,239	6,098	4,024	655
계	13,053	677,306	59,408	33,797	555,828	20,089	8,184

※ 신출근거 : 1차 예방접종 기축에서 수매물량(6.16일현재) 제외



부스틴-에스를 비육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부스틴-에스는 산유량 증가 및 성장촉진 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비육우에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비육우용과 젖소에 사용하는 함량이 틀리므로 그래도 사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비육우 적용함량도 체중 1kg당 0.03~0.06mg투여시 증체효과 및 사료효율도 개선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현재 저희(LG화학) 바이오텍 연구소에서 제품화하기 위하여 연구가 진행중입니다.